

## 부속서 IV

###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캄보디아

1. 이 양허표는 제9.2조(적용범위)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일시적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대한 캄보디아의 약속과 관련하여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따른 캄보디아의 약속을 규정한다.
2. 캄보디아는 다음의 약속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따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캄보디아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그들의 일시적 체류에 대하여 약속 안 함을 유지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캄보디아는 아래에 명시된 각 범주에 대하여 필수적인 비자 요건과 그러한 비자에 따른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부과되는 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4. 캄보디아는 제9.5조(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이 양허표에 규정된 인의 범주에 대하여 캄보디아 영역에서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그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모든 기간, 조건, 제한 또는 자격을 아래에 명시한다.
5. 아래에 규정된 약속은 레스토랑(CPC 642, 643) 및 연안운송을 제외한 해상 서비스(화물 및 여객)에 따른 국제 운송을 제외하고, 부속서 II의 캄보디아 양허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적용된다.
6. 관광객 안내 서비스(CPC 7472)의 경우 아래에 규정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안내를 위하여 캄보디아 국적이 요구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규정된 약속은 제8.6조(최혜국 대우),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제3항 및 제8.10조(투명성 목록)에 따른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함)
<b>A. 기업인 방문자</b>	
<p><u>정의:</u> 다음의 자연인.</p> <p>(i) 사업상의 회의 참석,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협상을 포함한 사업상의 접촉 수립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활동을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함.</p> <p>(ii) 캄보디아 내 소득원으로부터 소득을 받지 않으면서 캄보디아에 체류함. 그리고</p> <p>(iii) 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음.</p>	<p>기업인 방문자의 입국 비자는 최초 30일의 체류를 위한 90일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이는 연장 가능함.</p>
<b>B. 상업적 설립체 수립을 담당하는 인</b>	
<p><u>정의:</u> 임원직 또는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아래에 정의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의 캄보디아 내 상업적 주재의 설립을 담당하고, 기업 내 전근자 정의의 범주 (i), (ii) 및 (iii)에 기술된 인의 고용을 지원할 자연인.</p>	<p>상업적 설립체 수립을 담당하는 자연인은 최대 체류 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이 적용됨.</p>
<b>C. 기업 내 전근자</b>	
<p><u>정의:</u>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의 법인에 의하여 고용되었고 캄보디아 내 지점,</p>	<p>기업 내 전근자로 정의된 범주의 자연인의 경우 일시적 거주 및 취업 허가가 요구됨.</p>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함)
<p>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 입국을 하려는 다음의 자연인</p> <p>(i) <b>임원:</b> 노동시장테스트의 준수를 요구함이 없이, 조직에서 주로 그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서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는 자연인. 임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제 공급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임.</p> <p>(ii) <b>관리자:</b> 노동시장테스트의 준수를 요구함이 없이, 법인에 의하여 고용된 자연인으로서 전문성을 지닌 고급 수준의 지식 또는 법인의 생산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주로 지휘하며,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고,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며,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인. 이들은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공급에</p>	<p>그러한 허가는 2년간 발급되며 최대 총 5년까지 매년 갱신될 수 있음.</p> <p>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은 전문가 범주에 적용됨.</p>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함)
<p>필요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음.</p> <p>(iii) <b>전문가:</b> 조직에서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자연인.</p>	